

임실군의회 공고 2024 - 7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4. 1. 16.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임실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 고 자 료

- 가.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입법예고 : 2024. 1. 16. ~ 2024. 1. 22. (6일간)

마. 기 타

1) 제정 조례안

2)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